

#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 - 계약기간

-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
- 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## - 준수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.

## -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

노인장기요양기관 (방문요양) 기본 수가 (월 한도액) 2020년 기준

| 구 분 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월 한도액    | 1,498,300 | 1,331,800 | 1,276,300 | 1,173,200 | 1,007,200 | 566,600 |
| 본인부담금 내역 | 기초수급자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0% 부담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차상위계층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6% 부담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보험료감경대상자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9% 부담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일반수급자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15% 부담    |         |

※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,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

##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구분   | 금액(원)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방문요양 | 30분 이상 | 60분 이상 | 90분 이상 | 120분 이상 | 150분 이상 | 180분 이상 | 210분 이상 | 240분 이상 |
|      | 14,530 | 22,310 | 29,920 | 37,780  | 44,930  | 47,460  | 51,530  | 55,490  |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%를 본인이 부담한다.
2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(6%), 경감(9%), 국민기초생활수자는 무료이다.

### (신원인수의 권리, 의무)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1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  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  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  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  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  -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  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 -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 -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  -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### (계약의 해제)

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수급자의생활에 지장을 줄 때
4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5.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6. 시설 전원등 사유 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함.